

□ 2004년 4월분 심사기준(지침)

적용일 : 2004년 5월 1일 진료분

☞ 변경

연번	제목	변경전	변경후
1	다발성 하지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 인정 기준	<p>다발성 하지정맥류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화요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.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을 선행 후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경화요법을 실시한 경우 : 편측당 총 100%(50% + 25% + 25%,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) 범위 내에서 1회만 인정함.</p> <p>2. 정맥류발거술 등 선행수술 없이 경화요법만을 시행한 경우 : 1차 시술시는 편측당 총 200%(100% + 50% + 50%,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)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, 1차 시술로 효과가 충분치 않아서 경화요법을 추가 시술(2차 시술)하는 경우에는 편측당 총 100%(50% + 25% + 25%,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) 범위 내에서 1회만 추가 인정함.</p>	<p>다발성 하지정맥류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화요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 음 -</p> <p>1.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을 시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경화요법을 실시한 경우 : 편측당 총 100%(50% + 25% + 25%,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) 범위내에서 1회만 인정함.</p> <p>2. 정맥류발거술 등 선행수술 없이 경화요법만을 시행한 경우 : 1차 시술시는 편측당 총 200%(100% + 50% + 50%,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)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, 1차 시술로 효과가 충분치 않아서 경화요법을 추가 시술(2차 시술)하는 경우에는 편측당 총 100%(50% + 25% + 25%, 1회 시술시 최대 3부위 인정) 범위 내에서 1회만 추가 인정함.</p>

□ 2004년 5월분 심사기준(지침)

적용일 : 2004년 6월 1일 진료분

☞ 신설

연번	제목	심사기준 (지침) 내용
1	하지정맥류상병에 자206 광범위 정맥류발거술과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의 인정 여부	<p>하지정맥류 상병에 실시하는 광범위 정맥류발거술은 local resection을 모두 포함하는 수기이므로, 동측에 자206 광범위 정맥류발거술과 동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자205 사지정맥류국소제거술(가.경화요법 또는 나. 국소제거술)을 시행하더라도 광범위 정맥류발거술만 인정함.</p>